

**신구조문대비표**  
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

<b>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</b> [대통령령 제33112호, 2022. 12. 20., 타법개정]	<b>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</b> [대통령령 제33133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<p><b>제13조(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) ①</b> 법 제18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·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전체 세대수가 <b>150세대</b>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</li><li>2. 연면적 <b>3천제곱미터</b> 이상의 업무시설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나목2)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)</li></ol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13조(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) ①</b> 법 제18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·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전체 세대수가 <b>100세대</b>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</li><li>2. 연면적 <b>2천제곱미터</b> 이상의 업무시설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나목2)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)</li></ol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